

1. 인가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참석 방법 인가 설명회 일시 및 장소

- (일시) '25.9.18.(목) 오전 10:00
- (장소) 금융감독원 2층 강당
- (내용)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 관련 설명 및 Q&A

 인가 설명회 참석방법

- cmc@fss.or.kr 로 양식*에 맞춰 참석 신청

* 메일 제목 : [설명회 참석 신청] 회사명, 참석자 수, 대표 참석자 성명 및 연락처

2. 인가 접수 일정 및 절차

- **(접수 일정)**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('25.9.25일 잠정)
오전 9시 ~ '25.10.31일 오후 6시*

* 접수 마감일 오후 6:00까지 금융위에 접수된 건에 한하여 유효

- **(접수 방법)**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 서면*으로 접수**

* 별첨2 인가 신청서류 양식에 따라 작성

** (주소)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(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)

- 금융위원회 접수 후 사본을 금융감독원에 서면 및 이메일로 송부*

* ①(주소)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(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총괄팀 담당자)

②(이메일) cmc@fss.or.kr (메일 제목: [인가 신청] 신청회사명,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)

- **(유의사항)** 일괄평가 방식 적용 시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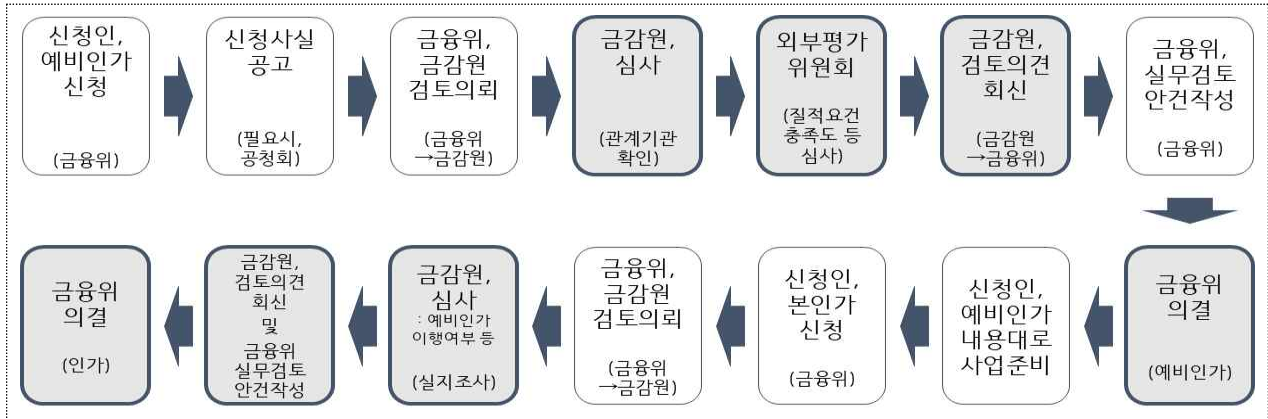
- 원칙적으로 신청서류는 접수 후 변경이 불가하며 수정·보완 없이 신청서류 그대로 일괄평가할 예정

※ 접수 전 담당자와 사전 연락 바랍니다.

☎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-2100-2658

☎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총괄팀 02-3145-7589, 7573

3. 인가심사 절차



□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심사 절차도 통상의 인가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

○ 인가 심사 관련 세부사항은 「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*」 참고

*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fss.or.kr) > 업무자료 > 공통 > 업무해설서 >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 (3. 금융투자 - 투자중개업 부분)

○ 인가 신청서류 제출 시, 매뉴얼 양식(별첨2의 붙임)에 따른 요약 자료(총 50p 이내)도 함께 제출

○ 가점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이해상충방지체계 부분 작성시 별도 목차로 기재*할 필요

* ① 컨소시엄 →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별도 목차로 관련 내용 기재

② 중기특화 증권사, ③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→ 사업계획서에 별도 목차로 관련 내용 기재